#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Ж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265-809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민영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임의공급 4차)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3.11.06.(월)	24.10.18.(금)	24.10.23.(수)	24.10.28.(월)	24.11.04.(월)

## 1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0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18.(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175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06.(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570이므로, 본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미달 단지로, 예비입주자가 없어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4.10.23.(수)	24.10.28.(월)	24.11.04.(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74-30)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공급계약, 발코니, 추가선택품목 합산 6억 이상) 의무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공급계약, 발코니, 추가선택품목 합산 6억 이상)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발표일(23.11.24.)로부터 6개월 → 현재 해제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92-2외 5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29층 5개동 총 348세대 중 잔여 17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3

ᄌ태고리버ᄎ	ㅁ덺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택관리번호	모델				동	호	
					102	402, 502, 702	
	01	074.9935	74	9	103	302, 602, 802	
					105	304, 404, 604	
2024910175				5	101	203	
2024910175	02	084.9924A	84A		103	403	
					105	202, 305, 306	
	03	084.9883B	84B	3	101	302, 502, 602	
		합 계		17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주택형	공급				공급금액		계약금(5%)			중	- -			잔금(35%)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 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약식표기)	세대수			네시비	신폭미	оноч	711 71	2024.07.22	2025.01.22	2025.07.22	2026.01.22	2026.05.22	2026.08.24	비구시경크
7.4	0	3층	2	174,455,885	340,544,115	515,000,000	2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74	9	4~10층	7	174,455,885	350,544,115	525,000,000	2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2층	2	189,963,107	355,436,893	545,400,000	27,270,000	54,540,000	54,540,000	54,540,000	54,540,000	54,540,000	54,540,000	190,890,000
84A	5	3층	2	189,963,107	366,436,893	556,400,000	27,82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55,640,000	194,740,000
		4~10층	1	189,963,107	377,436,893	567,400,000	28,37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198,590,000
0.45	2	3층	1	186,716,538	368,783,462	555,500,000	27,775,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194,425,000
84B 	3	4~10층	2	186,716,538	379,783,462	566,500,000	28,325,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198,275,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약식표기)	0807	계약시	입주지정일	기끄	
74	24,700,000	2,470,000	22,230,000		
	25,100,000	2,510,000	22,590,000		
84B	23,200,000	2,320,000	20,880,000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La	204 0225 5002 44	디더블유대원 주식회사	
중도금 / 잔금	농협	301-0336-6802-11	디더블유대원에이치 주식회사	

<sup>※</sup>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L +J	204 2025 2020 24	디더블유대원 주식회사 디더블유대원에이치 주식회사	
중도금 / 잔금	농협	301-0336-6809-61		

<sup>※</sup>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up>※</sup>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임의공급 4차) 공급세대수의 <b>900%</b> 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28.(월) ~ 2024.11.06(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0.2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및 계약 체결 서류

- 계약 체결 일시 : 2024.11.04.(월) 10:00 ~ 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8.(금)]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발급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땅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②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대리인 계약시 사용불가
	•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④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기간 :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⑥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		•	⑦ 계약자의 인감도장	-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⑧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 계약자 본인 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인 위임불가
		•	⑨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⑩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4.11.04.(월) 16:3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4.11.04.(월)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참고사항

#### ■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 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해야 합니다.
- ※ 2023.01.01. 시행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공급대금 중 60% 이내 중도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정기간 내 대출신청한 "을"(본인자서)에 대하여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융자를 알선한다.
- 중도금대출 무이자는 "을"이 납부하여야할 월납부 대출이자를 본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갑"이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납부분까지 이며, 그이후 대출이자는 "을"이 직접 금융기관에 "을"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 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11.06.)에 따릅니다.
- 총 분양대금의 5%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계약금이 일부라도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 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yi-cantavil.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74-30
- 분양 문의 : 031) 265 809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